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948 |
|----------|------|

2020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10월 16일, 김평남 의원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평남 의원)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방식에 적응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시대가 다가왔음.
- 하지만 교육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만1,856개의 학교 교실 가운데 34%인 8만1,625개의 교실에만 무선 AP(공유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타났고, 서울시의 무선 AP설치율 또한 23.8%라는 전국평균 보다도 낮은 AP설치율을 나타냈음.
- 이와 같이 아직은 원격수업에 대한 명확한 구축 근거 및 시스템이 규

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임.

- 이에,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19 상황과 이 후 언제 다시 확산될지 모를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원격수업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다.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라.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안 제5조)
- 마.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7조)
- 바.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사.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아.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0조)
- 자.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차.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3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김평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948호로 발의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코로나19사태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내 학교의 원격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원격수업¹⁾’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먼저, 교육부에서는 2020년 3월에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4월에는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학교에서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 이후 2020년 10월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를 개정하여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1) ‘교육부(2020.3.27.)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여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실시간 화상 교육 등)’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으로 구분 가능함.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표-1]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 |
|---|
|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② 수업은 주간(晝間), 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
|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
|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육과에 원격교육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초·중등교육에서의 원격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은 원격교육관련 수업모형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억 7백만원,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12억 6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표-2] 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관련 주요 예산

(단위 : 천원)

| 담당조직 | 세세부 사업명 | 구분 | 2021년도 | 2020년도 | | 전년 대비 증감 | |
|-------------|-----------------|-------------------------|--------------|------------|-------------|--------------|---------------|
| | | | 예산(안) (A) | 본예산 (B) | 추경예산 (C) | 본예산 (A-B) | 추경예산 (A-C) |
| 교육연구 정보원 | 원격수업지원 플랫폼구축 | 계 | 1,269,200 | - | 1,500,000 | 1,269,200 | △230,800 |
| | | 시스템구축비 | 1,007,800 | - | 1,218,400 | 1,007,800 | △210,600 |
| | | 시스템운영비 | 261,400 | - | 281,600 | 261,400 | △20,200 |
| 중등교육과 | 원격교육지원 | 계 | 507,080 | - | 좌동 | 507,080 | 좌동 |
| | | 블렌디드개인 맞춤형 수업모형개발 | 81,750 | - | 좌동 | 81,750 | 좌동 |
| | | 블렌디드수업 사례나눔 | 89,320 | - | 좌동 | 89,320 | 좌동 |
| | | 원격교육네트 워크 구축운영 | 336,010 | - | 좌동 | 336,010 | 좌동 |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원격수업 정책을 기반으로,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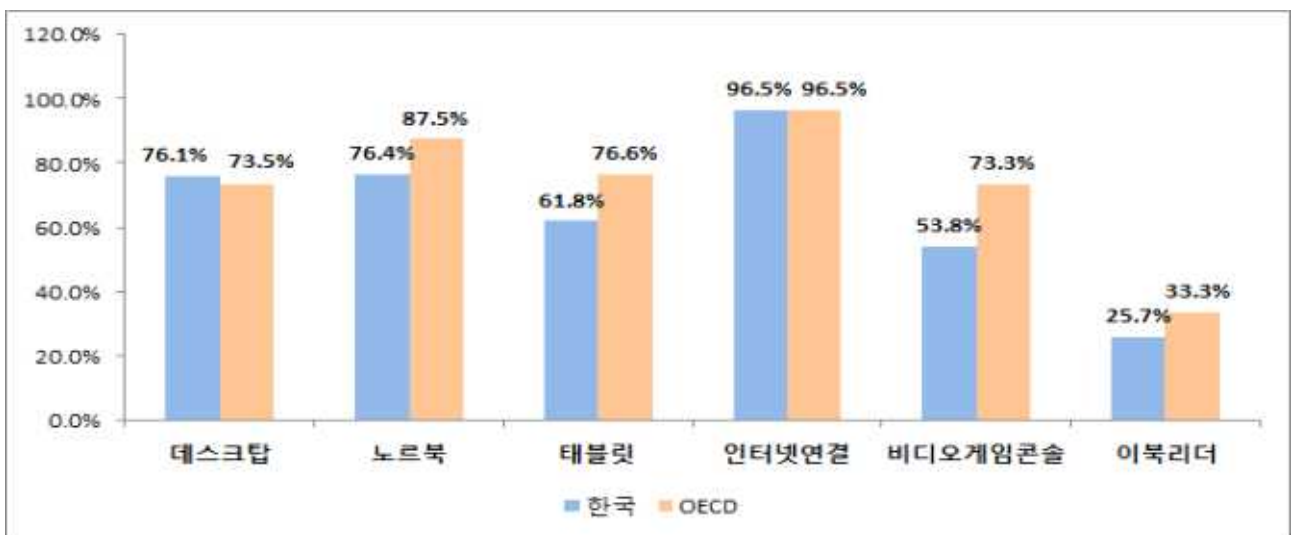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을, 본칙 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원격수업 지원사업(안 제7조), 연구학교 지정·운영(안 제8조),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9조), 장애 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안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여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학교 교육은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된 수업 방식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은 인터넷 활용, 스마트기기 등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여 원격수업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개발, 교원의 새로운 수업·평가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OECD 보고서²⁾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 내 디지털기기 및 환경을 구비한 학생 비율은 OECD 평균과 비교하여 ‘데스크탑’과 ‘인터넷연결’은 양호한 편이나 ‘노트북’, ‘태블릿’, ‘이북리더’ 등의 디지털기기 구비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상황으로, 현재 한국의 원격수업 관련 인프라 구축은 OECD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3] 가정 내 디지털기기 및 환경 구비 비교(한국 VS OECD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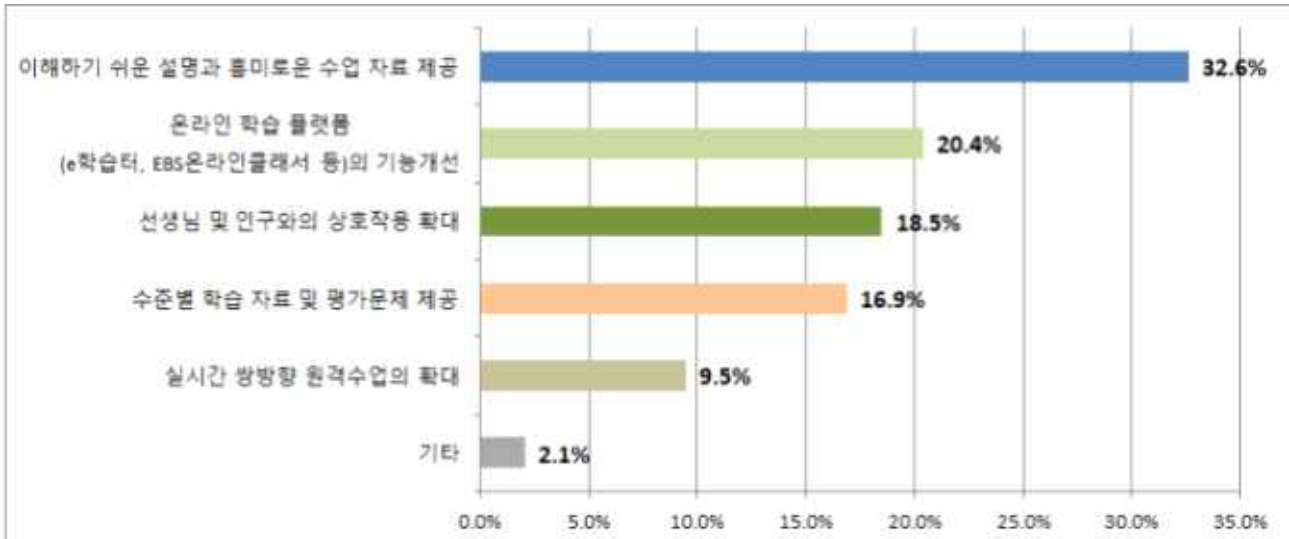
○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중·고등학생 212,434명 대상으로 더 나은 원격수업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³⁾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원격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수업 자료 제공(32.61%)’, ‘온라인 학습 플랫폼(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의 기능 개선(20.43%)’, ‘선생님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 확대(18.5%)’ 등을 원하고 있는바,

학생들이 원하는 원격수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설 및 기기 구축뿐만 아니라 학습 자료의 질 및 교사들의 원격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2) OECD(2020). A framework to guide an education repose to the COVID-19 Pandemic of 2020; 한국교육개발원(2020). 코로나19 대응 국가수준 원격교육체제 진단 및 과제, 재인용.

3)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표-4] 더 나은 원격수업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



○ 따라서 동 조례안 제7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원격수업 관련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원격수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3) 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격수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에 의한 학습 격차 문제는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20년 7월에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857,3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79%는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특히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중위권 학생의 비중은 줄어드는 등 온라인교육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낳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⁴⁾, 특히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의 특수

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⁵⁾.

-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현재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많은 국가에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기기를 제공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원격교육 정책에 있어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5] 국가별 원격교육 대응 현황 - 교육 취약계층 지원 국가

| 대상 | 독일 | 미국 | 이탈리아 | 중국 | 호주 |
|----|---------|-------------------------------------|----------------------------------|-------------------------------------|---|
| 학생 | 저소득층 지원 | 원격수업용 기기대여, 배송서비스도 함께 지원(소외계층 우선배려) | 디지털장비 및 접근성 확보 재정지원(특히, 저소득층 학생) | 교과서배송, 저소득층 지원(태블릿 PC 제공, 데이터 제공 등) | 디지털장비 지원(랩탑 대여, SM카드 등 무상지원) 취약계층 우편 활용 |

- 따라서 동 조례안 제10조는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의 보편적 복지 실현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의 지원방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별도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동 조문에서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17, 2020.11.10.).

4) 중앙일보(2020.4.3.). ‘온라인 개학’ 22만 3천명 스마트기기 없어... 교육부 “대여가능”
 한겨레신문(2020.8.10.). 온라인 마테효과
 한국일보(2020.9.2.). 비대면 수업에 학력격차 더 커졌고... 하위권은 아예 배제됐다
 5) YTN(2020.4.2.). 온라인 개학,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될까?
 한겨레(2020.4.20.). 수어 수업자료도 자막도 부족 청각장애인 원격수업 이종교

○ 그러나 동 조례안 제10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수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수업 방식 및 교육과정, 수업자료의 보급 및 공유 등 원격수업 전반에 있어서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바, 교육 복지우선지원사업과는 근본적으로 사업내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더욱이 현재 원격수업과 관련한 저소득층 등 교육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야하는 공교육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주요한 과제이며,

이에 교육부는 이미 교육급여 수급권자(중위소득 50%이하)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대여, 원격수업 기간 교육 사이트 데이터 무료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⁶⁾ 장애학생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학습방을 운영 하는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⁷⁾.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원격수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저소득층 등 교육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바,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원격수업 지원 내용은 동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매우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장애학생’이라는 용어를 ‘특수교육대상자’로 변경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17, 2020.11.10.).

○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이외에

6) 교육부(2020.4.1.) 모든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총력: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힘모으기로.

7) 교육부(2020.4.7.).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 ‘장애학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⁸⁾ 다른 여러 법규에서도 ‘장애학생’이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⁹⁾, 굳이 동 조례안에서 ‘장애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수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8) 「특수교육법」에 나타난 ‘장애학생’ 용어 사용 현황

| |
|--|
| <p>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p> <p>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둬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p>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p>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p> <p>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p> <p>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p> <p>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p> <p>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p> |
|--|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학생’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운영
5.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6.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보급 사업
4.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
5.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6.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7.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장애학생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